



문서번호 시법-2010-1004

수 신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 제위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장동엽 간사 02-723-0666 taijist@pspd.org)

제 목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근무'로 인한 구체적 문제 사례와 관련한 질의 요청

날짜 2010. 10. 15. (총 2 쪽)

'검사의 편법적 청와대 파견근무'로 인한 구체적 문제 사례와 관련한 질의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귀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김영삼 정부 당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검찰청법 44조의2)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검사 사직 -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 검사 신규임용' 형식으로, 사실상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최근 조사자료로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2008년 10월 참조).

그런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귀 의원께서 대검찰청(18일)과 법무부(21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례의 문제점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따져 물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백재명 부부장 검사입니다.

백 검사는 지난 해 8월 국가정보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으로 전보되었으나, 그 직후 사직서를 내고, 올해 7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백 검사는 행정관직을 그만둘 즈음 법무부에 신규임용을 신청하였고, 귀 장관께서는 그를 8월 2일자로 신규임용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배치하였습니다.

우선 공안1부라는 곳이 각종 선거사건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곳임은 귀 의원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이를 곧바로 배치하는 것은 선거사건 처리 등에 있어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게 하는 인사 조치라 봅니다.

게다가 백 검사는 공안1부 부부장으로 올 8월 검찰로 복귀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 유권자희망연대'가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2과 이춘삼 경감을 교육감 선거 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4월에 고발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0형제 45767)을 인계받아 주임검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청 이춘삼 경감이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올 교육감 후보자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성향의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는 방안을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 등에 하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교육감 후보들을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구분한 뒤, 특정 성향의 후보에 유리한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은 사건이며, 정치적으로 매우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건을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검사가 맡은 이상, 고발인 측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 참여연대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에 별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청와대행 전에 사직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줄 구체적 사례가 발견된 이상, 이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검사에게 재배당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으로 중립성에 매우 민감한 사건들을 일정기간 동안 백 검사에게 배당하지 말도록 검찰총장 등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의 문제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 근무 후 신규임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신규임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검사의 '편법적인 청와대 파견근무' 인사행태를 막아 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례와 관련한 문제들을 질의해주시고, 이후 입법 활동에도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